청라 29블럭 호반 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5월 4일(월) 견본주택 오픈

VERTIUM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모으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장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해자로 인한 착오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교육참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는 인접학교 외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는 서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모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문의).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cheongnahoban.com 내 설치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공간"을 활용하시기 바랍]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 → 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 (08:30~18:00 → 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전매에 금금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기 기능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단, 한국 주택법 및 관련법령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550호(2009.04.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29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2~30층 15개동 총 2,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109,585.0㎡) 중 아파트 지분 106,387.0㎡, 상가 지분 2,509.0㎡, 유치원 지분 689.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총 2,134세대 중 특별공급 319세대 포함(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42세대, 33개 특별공급 64세대, 기타 특별공급 213세대)

(단위 : 면적-㎡, 금액-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	층수	층별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계약시)	2회 2009.06.29	중도금 1회 2009.09.07	2회 2010.01.07	3회 2010.06.07	4회 2010.12.07	5회 2011.05.06	6회 2011.10.07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구주택 조합원분양 + 무주택분양
민영주택	22146-01	2009000232 (01)	84.9482	84.9482	27.3062	112.2544	58.9663 / 56.4052	171.2197	49.8530	23~30	126,907	1층	19	180,273	309,2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62,000	112,2544
												2층	21	192,473	321,4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64,600	
												3층	30	204,773	333,7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67,300	
												기준층	676	212,573	341,5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68,700	
												최상층	30	237,573	366,5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73,700	
	22146-02	2009000232 (02)	84.9382	84.9382	26.7265	111.6647	58.9584 / 56.3983	170.6231	49.8472	23~25	126,911	1층	13	179,389	308,3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61,900	111,6647
												2층	16	191,789	320,7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64,700	
												3층	21	204,089	333,0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66,600	
												기준층	437	211,889	340,8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68,000	
												최상층	21	241,389	370,3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74,300	
	22146-03	2009000232 (03)	84.9289	84.9289	26.8956	111.8245	58.9519 / 56.3924	170.7764	49.8417	25~30	126,897	1층	18	179,503	308,4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62,000	111,8245
												2층	18	191,903	320,8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64,800	
												3층	18	204,203	333,1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66,700	
												기준층	428	212,003	340,9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68,900	
												최상층	18	240,903	369,8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74,600	
	22146-04	2009000232 (04)	84.9934	84.9934	27.4315	112.4249	58.9968 / 56.4352	171.4217	49.8795	25~30	126,995	1층	12	180,205	309,2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62,000	112,4249
												2층	12	192,705	321,7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64,900	
												3층	12	205,005	334,0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66,800	
												기준층	302	212,905	341,9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69,100	
												최상층	12	241,905	370,9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74,900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등에 따른 세분 리건의 하상층 층수일(필로티) 등은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일정한 분양대금(부대비용)를 제외한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면, 월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해당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중도금 이외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천정(준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정해진 입주일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자는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청약예금은 청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청약예금 가입기간 만큼 추가 납입하여 유효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장수 방법

□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33개 특별공급, 기타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충별 · 동별 · 호별, 청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신청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당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04.30)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기준에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먼저접수 된 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나머지 3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전매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지순위에게 공급함(단,인천광역시 년 이상 거주자는 30%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해당 추첨제로 청약접수 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제 / 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가점항목	가점산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자격 기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3항 각 호의 예외)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당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04.30)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기준에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먼저접수 된 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나머지 3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전매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지순위에게 공급함(인천광역시 년 이상 거주자는 30%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해당 추첨제로 청약접수 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제 / 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가점항목	가점산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자격 기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3항 각 호의 예외)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당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04.30)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기준에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먼저접수 된 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나머지 3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전매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지순위에게 공급함(인천광역시 년 이상 거주자는 30%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해당 추첨제로 청약접수 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제 / 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내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위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점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자에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하되,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지원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점자와 함께 추첨 입주자 선정함 ※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받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일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하되, 최초의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하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청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함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로,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화마루(걸레받이 포함)가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화장실간 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 (타일, 시트지, 패브릭), 주방벽타일, 몰딩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초배지 천장: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초배지, 퍼펜박스, 우물천정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욕실등	매입등,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바닥, 벽 (대리석천판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슬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방수바닥, 벽체, 샤워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전기, 통신배관배선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기구	주방기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벤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4구쿡탑 및 오븐렌지	상부배관, 렌지후드(자동식스위치) 설치관련 전기 · 통신 배관/배선 (주방TV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안방)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포켓도어는 문틀시공, 목창호 가틀, 문틀시중, 플라스틱 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30)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되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자녀 특별공급(64세대/3%)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4.30)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이 젊은 자)를 최종 선정함

– 주택법령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세대수 중 3자녀 세대가 일정한 경우 미달되는 경우 나머지 세대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으로 전환 가능

· 3자녀 특별공급세대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동도 이미트 계약용), 계약자의 인감도장

· 제출기한 : 이내 지정계약일 우편등 입금하거나 주택공급 신청시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임할 경우 계약일 결재일 기준으로 한다 · 발코니 확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금 별도 준비

· 발코니 확장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청약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청약예금 가입은행에 청약예금 가입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금 납부 : 이내 지정계약일 우편등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접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청약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청약예금 가입은행에 청약예금 가입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절차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한국외환은행	631-000425-811	(주)한국토지신탁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한국외환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하되 영업일 입금 불가하니 미리해, 최소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서류
정당당첨자	내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동도 이미트 계약용),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기업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금 별도 준비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주자명 기업등본 인감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등 – 주민등록증 · 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동도 이미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계약금